13. 消防法施行規則中改正令

內務部令 第667號 1995. 12. 29

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소방서장(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를 "소방서장에게"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승인을"을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관계서류를"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4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2.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법 제6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소방시설설치계획표
3. 제2호의 소방시설설계업자의 등록증 및 소방시설을 설계한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의 면허수첩 사본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 및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예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

3.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일정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기간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종전의 동조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5호중 "서류(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한다)"를 "서류(영 제9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가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서류는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하고, 제6호의 서류는 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한다.

6. 소방시설점검업자가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하게 한 계약서

제6조 제1항중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를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소등설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표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중 "의하되, 제조소등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의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소등용도폐지신고에 의하는 때에는 제조소동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전화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소방서장이 제조소등 설치허가증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완공검사신청은"을 "완

공검사(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신청은"으로,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를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완공도면 및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라 한다) 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소방서장 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를 "소방서장·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게"로 한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대상범위등) ①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시험대상범위는 위험물탱크중 최대저장용량이 100만리터미만인 것으로 한다.

②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에 필요한 비파괴시험 및 기밀시험의 일부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한 시험이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은 위험물탱크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0조의3(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방법 및 수수료등) ①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은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 또는 수압시험에 의하고, 비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 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능시험에 있어서는 시험방법 중에서 탱크의 설치위치·구조등을 감안하여 안전성 유지에 적합한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용량 100만리터이상의 탱크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수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시험에 있어서 한국산업규격(KS B 6225 : 강제석유저장탱크의 구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하여는 동 규격을 적용하며, 그밖의 탱크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전체 용접부(노즐등의 용접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초음파탐상시험·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중 하나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한국

산업규격(KS B 6225 부속서 3)에 의한다.

④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기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및 공사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시험성적서교부대장에 시험결과 및 시험성적서 교부사항을 기재하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신청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를 교부하되,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 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의5 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가 실시하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수수료는 별표 1의2와 같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결과 보수등이 필요하여 재시험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의4(정기점검) ①법 제1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점검횟수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점검대상 범위는 별표2의 2와 같다.

②정기점검의 수수료는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수수료를 참작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별지 제22호의2 서식의 제조소등 정기점검기록표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되, 일반점검의 경우에는 2년간, 누설점검의 경우에는 6년간, 구조안전점검의 경우에는 12년간 그 기록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조소등의 설치자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가 정기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제조소등정기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되,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기점검의 기준등 정기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5(정기점검의 절차) ①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정기점검을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정기점검신청서에 안내도를 첨부

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파괴시험 및 기밀시험의 일부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함 시험이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는 정기점검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에게 별지 제22호의5 서식의 정기점검필증을 교부하고, 정기점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조소등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통보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이를 개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서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그 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의6(검사원) ①법 제17조 제3항 후단 및 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기술사·비파괴검사기술사·원자력발전기술사·소방설비기사·산업안전기사·비파괴검사기사·원자력기사·위험물취급기능사·비파괴검사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이공계대학원의 석사과정이상 또는 이공계대학에서 화학(화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
3. 이공계대학에서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 분야외의 이공계열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에서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 및 공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의 범위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당해 이동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재난 그밖의 비상시의 화재진압·인명구조등 조치에 관한 사항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영 제33조 제16항의 규정에서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소화용수시설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중 "특수장소의"를 "특수장소(아파트를 제외한다)의"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한 경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종합정밀점검을 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연도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시설점검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을 겸업하는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자는 당해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시공을 감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자체점검의 의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방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 등록을 할 것
2. 소방시설관리사의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할 것
3. 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할 것

제31조 제1항 제2호중 "자격수첩"을 "자격수첩 또는 경력·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34조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폐업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2년내에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그 기간동안 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를 "실시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로 한다.

1. 소방설비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제48조중 "의한다."를 "의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9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중 "면적의 시험공지·제조실"을 "면적의 제조실"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시험시설은"을 "시험실은"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소화기의"를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의"로 하고, 동호 다목중 "시험공지는"을 "시험실은"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하여야 하며, 압축식 또는 가입식 소화기의 제조소는 지상 단층 건축물로 할 것"을 "할 것"으로 하고, 동항 제7호중 "소방용호스·결합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을 "소방호스·결합금속구·관창·송수구·방수구·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방수총"으로 하며, 동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9호중 "소방용호스의"를 "소방호스의"로 한다.

8. 소방용자동차(펌프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외한다)·동력소방펌프 및 자동소화기기(분말헤드를 제외한다)의 제조소에는 20세제곱미터이상의 저수조를 소방호스·결합금속구·관창·송수구·방수구·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방수총의 제조소에는 5세제곱미터이상의 저수조를 설치할 것. 동일구내에 2종이상의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3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4조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폐업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접

수한 시·도지사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허가증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제조업자에 대한 수거·교체·폐기등의 조치명령) ①내무부장관은 법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정을 받은 후 그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이하 "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수거·폐기명령
2. 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을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경우에는 폐기명령
3. 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을 설치·변경·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체·폐기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교체·폐기명령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교체·폐기등의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임을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표지를 그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교체·폐기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수거·교체·폐기조치를 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59조 각호외의 부분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61조 제1항중 "40일전까지"를 "30일전까지"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중 "40일이내에"를 "30일이내에"로 한다.

4. 영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화공·섬유분야기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자 또는 소방설비기술사·소방설비기사의 연명부와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64조 제3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폐업을 신고한 때에는 리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7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설비의 신설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제연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소방설비의 증설공사
   가. 2개소이상의 옥내·옥외소화전설비의 증설
   나.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제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로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방호구역·방수구역·경계구역·제연구역·송수구역·전용회로 및 살수구역이 증설되는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및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는 시공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영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대상인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소방시설의 설계도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대상이 아닌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설비공사업체의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 제항(종전의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62조 제1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동항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6항(종전의 제3항)중 "제6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공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소규모공사의 범위등) 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라 함은 제6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를 말한다.

제69조 제1항중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완공검사를"을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로, "소방시설도면을 첨부(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변경신고후 그 신고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를 "소방시설도면을 첨부

하여"로, "공사 또는 정비의"를 "공사에 대한"으로, "있고, 이 경우 소방시설도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제69조의6 제1항중 "때에는"을 "때 또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류 및 성능이 그 특수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으로, "제66호의6서식의"을 "별지 제66호의6서식의"로 한다.

제69조의7 제2항 제3호중 "시설도면(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변경신고후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도면"으로 한다.

제69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8(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①법 제6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6호의13서식의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폐업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첨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폐업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폐업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을 받은 사람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2. 등록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
3. 등록을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
4. 그밖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

제69조의13 내지 제69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13(하자여부 심의요청) 영 제40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 또는 소방서장의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은 별지 제66호의15서식의 소방시설하자여부심의신청서에 의하되,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 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의14(하자보수보증내용 제출) 영 제40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내용의 제출은 별지 제66호의16서식의 하자보수보증내역서에 의한다.

제69조15(하자보수보증서등에 대한 조치) 특수장소의 관계인(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당해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영 제40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서등의 종류에 따라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상장유가증권인 주권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다.
3. 상장유가증권인 국채·지방채 또는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권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다.
4. 정기예금증서를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9조의16(하자보수기간의 만료통보) 영 제4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9조의17(특수공법등의 심의요청) 법 제65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별지 제66호의17서식의 특수공법등의 심의신청서에 의하되,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 특수공법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2조 제1항중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제17조 제1호·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무에 관한 강습은"을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및 제17조 제1호·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은"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위험물취급업무·소방시설점검업무강습수료자명부대장을"을 "위험물취급업무강습수료자명부대장을"로 한다.

제83조 제1항중 "위험물취급업무·소방시설점검업무강습원서에"를 "위험물취급업무강습원서에"로 한다.

제86조 제1항중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소방시설점검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을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으로, "2급 방화관리자수첩, 별지 제7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원수첩을"을 "2급 방화관리자수첩 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위

험물안전관리자수첩을"로, "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시설점검원수첩교부·재교부대장을"을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교부·재교부대장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7조 제2호, 제22조 제3호 또는 별표 4의 비고 제1호·제2호에"를 "제17조 제2호 또는 제22조 제3호에"로, "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시설점검원수첩교부신청서에"를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교부신청서에"로 하며, 동항 제1호중 "제17조 제2호, 제22조 제3호 및 별표 4의 비고 제1호에"를 "제17조 제2호 및 제22조 제3호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제2항 제6호·제7호 및 별표 4의 비고 제2호에"를 "제2항 제6호 및 제7호에"로 한다.

제92조중 "위험물시설안전원·소방시설점검원별로"를 "위험물시설안전원별로"로 한다.

제93조 제6항 본문중 "등록수수료는"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수수료는"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제3호으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변경등록 : 2만원

⑧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수수료는 제10조의3 제6항 내지 제8항에 의하고, 정기점검으 수수료는 1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의 제1호나목중 "진압을"을 "진압 및 인명의 구조·구급을"로 하고, 제2호가목 (4)중 "법 제17조의2 제1항의"를 "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의"로 하며,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표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는 경방조사만 실시하되, 건축물 신축후 용도·구조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특수장소	요 건	
1. 근린생활 시설	수퍼마케트·일용품등의 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지하층의 것은 제외)·기원·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침술원·접골원·정구장·탁구장·당구장·금융업소·사무소·결혼상담소·사진관·표구점·기술계학원 등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만, 상기 2이상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것은 600제곱미터미만인 것	1. 사업목적상 직접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가연물이 적을 것

특수장소	요 건	
2.숙박시설	여인숙·여관등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이거나 2층이하인 것	2. 건물구조가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이고 생산물품이 비위험물 또는 비가연물일 것.
3.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것	
4.업무시설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마을공회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등으로 방화규정을 따로 적용받는 공공업무시설 및 발전소·변전소 등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따로 관리하는 시설	
5.공장·창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로서 원료 및 생산품이 불연재료이고 연면적 6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기타	공항시설·철도역사·교정시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관련시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수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		

별표 1의 제5호 마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방시설점검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 소방서장은 예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 및 제조소등의 소방검사를 위하여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점검공사·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타·한국화재보험협회·전국소방인연합회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4의 제1호 나목중 "4인이상"을 "2인이상"으로 하고, 비고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기술사를 포함한다)

별표 6의 비고 (3)중 "1296㎜이상의"를

"648㎜이상의"로 한다.

[별표 7]의 시험공지(제곱미터이상)란을 각각 삭제하고, 소화기구란의 비고란중 제1호 후단 및 제2호 후단을 각각 삭제하고, 동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피난기구란의 비고란중 단서를 삭제한다.

3. 동일구내에 2종이상의 소화약제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중 높은 제조소별 기준면적에 다른 제조소별 기준면적의 5분의1을 각각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별표 8의 제2호 나목 표에 52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소화농도측정설비·기기	

별표9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 및 분야별		소방시설의 공사의 종류
방염처리업		영 제11조 제2항 각호의 물품에 대한 방염처리
공사업	기계분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및 피난기구에 대한 공사
	전기분야	경보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에 대한 공사

별표 9의 비고 제1호중 "2급 소방시설공사업은"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으로, "공사 및 정비에"를 "공사에"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 본문중 "공사 또는 정비하지"를 "공사하지"로 하고, 동호가목 내지 라목중 "공사 또는 정비하는"을 각각 "공사하는"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15층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11조 제2항 각호의 방염대상물품중 합판 또는 섬유판은 제조과정이나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서 직접 방염처리를 할 수 있다.

별표 13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5호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가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한다)

5. 소방시설점검업자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하게 한 계약서(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5항이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한다)

※비고 : 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면중 "㊞"을 "서명(인)"으로 하고,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뒷면의 처리기관란의 "소방서장(시장·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한다.

구비서류 :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별지 제5호서식의 앞면중 "제16조 제1항의"를 "제18조 제1항의"로, "㊞"을 "서명(인)"으로 하고,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소방서장(시장·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한다.

1.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위치·구조 및 설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별지 제6호서식의 제1면중 "소방서장 ㊞"란 밑에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지사항

소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승계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의 갑지 앞면중 "소방서장 ㊞"란 밑에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을지의 이동탱크저장시설 비지용의 제1호 및 제2호의 도면중 유효기간란 밑에 "○○소방서장 ㊞"을 신설한다.

※공지사항

소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승계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내지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앞면중 "㉮"을 "서명(인)"으로 하고,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소방서장(시장·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허가증재발급"을 "허가증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의 앞면중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서"를

"제조소등의 □완 □부분완공 검사신청서"로 하고, ⑧완공연월일란 밑에 ⑨검사신청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검사신청시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면중 구비서류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소방서장(시장·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한다.

구비서류

1. 위치·구조·설비(소방시설을 포함)에 대한 완공도면 1부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로부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1부

※비고 :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함

별지 제21호 서식의 앞면중 "㉮"을 "서명(인)"으로 하고, 비고란위에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뒷면의 처리기관중 "소방서장(시장·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한다

구비서류

1.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완공도면 1부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로부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22호서식의 앞면중 "소방서장(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를 "소방서장(한국소방검정공사·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하고,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소방서장(시장·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 서식의 앞면 처리기간란의 "30일"을 "20일"로 하고, 뒷면의 처리기관란의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앞면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앞면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앞면중 "신청인"을 "신청인 서명(인)"으로 하고,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소방서장(시장·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1면중 "㉮"을 각각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앞면의 처리기간란중 "30일"을 "20일"로 하고, "⑨소방시설관리자"를 "⑨소방시설관리사"로 하며, "㉮"을 "서명(인)"으로 하고, 뒷면중 "인가통보"를 "등록통보"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앞면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38호 서식 뒷면의 기재요령란중 응시자격구분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설비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별지 제42호서식]의 앞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 서식] (앞면)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수첩)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재교부신청의 종류	□소방시설관리사증 □소방시설관리사수첩			
⑤관리사증번호		⑥관리사수첩번호		
⑦관리사자격취득일				
⑧재교부신청사유				

소방법시행규칙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수첩)을 재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내무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못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사증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수첩	수수료 1만원

21024-21411일
'92. 9. 1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3호서식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12일"을 각각 "5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앞면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앞면의 ⑦신청사항란중 "□ 양도·양수"를 삭제하고, "㊞"을 "서명(인)"으로 하며,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의 앞면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앞면의 처리기간란중 "40일"을 "30일"로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갱신)를"을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갱신)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앞면중

"□제 □방염처리 종 소방설비공사업면허대장"을

"□전 □방 □방염처리 문 염 소방설비공사업면허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면의 처리기간란중 "20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의 앞면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앞면중 "㊞"을 각각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중 "㊞"을 각각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앞면의 ⑤면허의업종란중 "□소방시설정비업"을 삭제하고, ⑧면허종별란중 "□1종 □2종"을 "□전문 □일반"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앞면의 ⑳공사종류중 "□정비"를 삭제하고, 구비서류란의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앞면의 ⑱공사종류란중 "□정비"를 삭제하고,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소방서장(시장·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한다.

구비서류 :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의 시설도면 1부.

별지 제66호의3 서식 앞면의 처리기간란중 "30일"을 "20일"로 한다.

별지 제66호의7 서식의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소방본부장·소방서장(시장·군수)"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의8서식중 "제69조의6 제1항의"를 "제69조의7 제1항의"로 하고, 구비

서류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의 시설도면 1부

별지 제66호의9서식의 앞면중 "제69조의6 제1항의"를 "제69조의7 제1항의"로 하고, 구비서류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소방본부장·소방서장(시장·군수)"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3.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의 시설도면 1부

[별지 제66호의15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의1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의 앞면중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의 제목란중 "청원소방의"를 "청원소방원의"로 하고, "㊞"을 "서명(인)"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의2서식중

□1급 방화관리업무
"□2급 방화관리업무 강습수료자명부대장"을
□위험물취급업무
□소방시설점검업무

□1급 방화관리업무
"□2급 방화관리업무 강습수료자명부대장"으
□위험물취급업무

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중

"□1급방화관리업무 □위험물취급업무
□2급방화관리업무 □소방시설점검업무

강습원서"를

□1급 방화관리자
"□2급 방화관리자강습원서"로 한다.
□위험물취급업무

별지 제76호서식중

□1급 방화관리자
"□2급 방화관리자 수첩교부(재교부)대장"을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점검원

□1급 방화관리자
"□2급 방화관리자 수첩교부(재교부)대장"으
□위험물안전관리자

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서식중

"□1급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2급방화관리자 □소방시설점검원

수첩교부신청서"를

□1급 방화관리자
"□2급 방화관리자 수첩교부신청서"로
□위험물안전관리자

하고, 구비서류란의 제1호중 "제17조 제2호, 제22조 제3호 및 별표 4의 비고 제1호에"를 "제17조제2호 및 제22조 제3호에"로 하며, 제2호중 "제2항 제6호·제7호 및 별표 4의 비고 제2호에"를 "제2항 제6호 및 제7호에"로 한다.

별지 제77호 서식중

"□1급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2급방화관리자 □소방시설점검원

수첩재교부신청서"를

□1급 방화관리자
"□2급 방화관리자 수첩재교부신청서"로
□위험물안전관리자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의 1면 제1호중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를 "동법 시행령 제

64조 제1항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1일부터, 제69조의13 및 제69조의17의 개정규정은 중앙 및 지방의 소방안전기술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제69조의14 내지 제69조의16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가 된 건축물에 대한 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신청시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종전으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된 제조소등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 신청시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제조소등의 최초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시행전에 제조소등이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위험물탱크에 대한 누설 및 구조안전에 대하여 점검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점검을 받은 날을 최근의 누설점검 및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날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 누설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의 2 비고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997년 6월 30일까지, 5년이상 10년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5년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에 있엇 이 규칙 시행후 최초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2의2 비고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997년 6월 30일까지, 10년이상 20년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10년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의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수수료(제10조의3 제1항관련)

1. 충수·수압시험

탱크용량	수 수 료	비 고
1만리터미만	4만5천원	①시험에 필요한 충수등의 준비는 시험신청인이 부담한다. ②2기이상의 탱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험하는 경우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의 5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1만리터초과 2만리터이하	8만5천원	
2만리터초과 3만리터이하	10만5천원	
3만리터초과 5만리터이하	14만5천원	
5만리터초과	매 10만리터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비파괴시험

시험의종류	최 저 시험량	수수료의 기준단가	비 고
방사선투과시험	15매	10,000원/매	①최저시험량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시험량에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방사선투과시험시 X선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기준단가의 120%를 적용한다. ③야간작업·휴일작업시에는 기준단가의 130%를 적용한다.
초음파탐상시험	15m	10,000원/m	
자기탐상시험	20m	5,000/m	
침투탐상시험	20m	5,000원/m	

3. 기타시험 : 시험신청인 및 성능시험자·공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2의2]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의 구분·점검방법·점검자의 자격 및 점검횟수(제10조의4 제1항관련)

점검대상범위	점검 구분	점 검 방 법	점검자의 자격	횟수
ㅇ제조소등	일반 점검	ㅇ위치·구조·설비등의 기술기준상의 적합여부	ㅇ위험물안전관리자	매년1회 이상
ㅇ옥외탱크저장시설(100만리터이상 1,000만리터미만) ㅇ지하탱크저장시설(난방용으로서 2만리터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ㅇ이동탱크저장시설	누설 점검	ㅇ탱크 및 탱크와 연결된 지하 매설배관의 누설시험	ㅇ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ㅇ한국소방검정공사	5년 1회
ㅇ옥외탱크저장시설(1,000만리터이상)	구조 안전 점검	ㅇ탱크외부의 목측시험 ㅇ탱크 및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누설시험 ㅇ탱크 바닥판으 두께측정 ㅇ탱크용접부분의 비파괴검사(애눌러판과 측판과의 용접부 또는 바닥판과 측판과의 용접부에 한한다)	ㅇ한국소방검정공사	10년 1회

※비고

1. 누설점검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최근의 누설점검을 받은 날부터 4년 6월이 경과한 날과 5년6월이 경과한 날사이에 실시하고, 구조안전점검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최근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과 11년이 경과한 날사이에 실시한다.
2. 정부 비축유를 저장하고 있는 제조소등으로 원활한 석유수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소방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소의 범위내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이유◇

소방법 및 소방법시행령의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00호 1995. 8. 10, 대통령령 제14747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등에 관한 세부절차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및 감리결과의 통보시에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간소화함(제2조·제6조·제67조 및 제69조의7).

나. 방화관리자의 선임기간을 건축물등의 완공일 또는 방화관리자가 해임된 날부터 30일이내로 함(제4조).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종류, 점검으 구분, 점검방법 및 점검대상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0조의4 및 별표 2의2).

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자체점검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가 행하도록 하던 것을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도 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자체점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9조 및 제29조의2).

마. 소방시설점검업,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등의 휴업신고등을 신고서 제출외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54조 및 제64조).

바. 하자보수보증내용의 제출, 하자발견시 조치사항 및 하자보수기간의 만료통보등을 규정함(제69조의14 내지 제69조의16).

사. 화재위험이 낮거나 비교적 소규모로서 소화기등 경미한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특수장소를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함(별표 1). 〈내무부 제공〉